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·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연수구보

■ 구정 방향 ■

함께 가꿔요!
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제로 115호 (우)406-120 ☎ 810-7072 / FAX 810-707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691호 2012. 5. 21.(월)

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-43호(도로명주소 고시) 1

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-395호(인천광역시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) 3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-404호(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) 7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-405호(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) 12

회							
람							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05. 21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61 외 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~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05. 21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

NO	증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-7	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61	신축	2011-01-31	컨벤시아대로의 시작지점에서 약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송도더샵 그린 애비뉴 8단지
2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-8	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35	신축	2011-01-31	컨벤시아대로의 시작지점에서 약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송도더샵 그린 애비뉴 7단지

「인천광역시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5월 15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인천광역시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지명위원회의 근거 법률인 「측량법」이 폐지되고, 「측량·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로 통합·제정(2009.06.09.)되어 시행(2009.12.10.)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- 지명위원회 구성, 간사와 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개정 주요내용

○ 조례 제명 띄어쓰기

- 제명 “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”로 함.

○ 지명위원회 근거 법률 변경(안 제1조)

- “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「측량·수로조사

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”
로 함.

○ 지명위원회 부위원장 변경(안 제2조제2항)

- “문화공보실장이 된다.” 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” 로 한다.

○ 지명위원회 서기·간사 변경(안 제10조)

- “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” 를 “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,
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”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2년6월4
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【(참조: 문화체육과장)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☎032-810-7088, FAX
032-810-7089, www.yeonsu.go.kr】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, 법인명,
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사항

라. 제출서식

제 정 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신·구조문 대비표 포함)

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연수구 지명위원회
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
를 “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「측량·수로조사 및
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문화공보실장이 된다.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”로
한다.

제10조 중 “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”를 “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
되고,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구성) ① (생략)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문화공보실장이 된다.</u> ③·④ (생략) 제10조(간사와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<u>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</u>	<u>인천광역시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<u>측량·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----- 제88조 내지 제95조</u> <u>까지의 규정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-----. 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<u>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10조(간사와 서기) ----- ----- ----- <u>간사는 문화체육 과장이 되고,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</u>

「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2년 5월 18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연수구립풍물단 예술감독이 지휘자, 상쇠, 예술감독으로 혼용 표기되어 혼선을 유발하고 있음. 따라서, 직책명을 예술감독으로 통일하고자 함.
- 직책명 중 지휘자는 구립관악단과 구립여성합창단에, 예술감독은 구립풍물단에 적용함으로서 예술단체에 적절한 직책명을 사용하고자 함.
- 기타 표기상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술단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개정 주요내용

- 예술단체별 단원의 종류와 정원, 직책 유무에 따른 단원구분을 위한 내용 개정 (안 제3조, 안 제4조제2항)
 - 제3조 중 “정원은 “별표1” 과” 를 “종류 및 정원은 “별표” 와” 로 개정
 - 제4조제2항 본문 중 “단원” 을 “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” 으로 개정

○ 구립예술단체 직책명(지휘자) 변경(안 제4조제1항)

- ‘지휘자’ 를 ‘지휘자 또는 예술감독(이하 “지휘자” 라 한다)’ 로 개정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2년6월7일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【(참조: 문화체육과장)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☎032-810-7088, FAX 032-810-7089, www.yeonsu.go.kr】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, 법인명,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사항

라. 제출서식

제 정 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신·구조문 대비표 포함)

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정원은 “별표1” 과” 를 “종류 및 정원은 “별표” 와” 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지휘자는” 을 “지휘자 또는 예술감독(이하 “지휘자” 라 한다)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단원” 을 “지휘자를 제외한 단원” 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표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제2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단장은 연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되며, 각 예술단체 단원의 정원은 “별표1”과 같다.	제3조(구성) ----- ----- ----- 종류 및 정원은 “별표”와 ----.
제4조(단원의 위촉) ①각 예술단체의 지휘자는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.	제4조(단원의 위촉) ①----- ----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(이하 “지휘자”라 한다)은 ----- ----- -----.
②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국내·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각 예술단체 지휘자의 추천으로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.	②지휘자를 제외한 단원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[별표]

예술단체별 단원의 종류 및 정원(제3조 관련)

1. 관악단

구 분	정 원	비 고
계	40명	
지휘자	1명	
부지휘자	1명	
악장	1명	
총무	1명	
악기악보계	1명	
출연단원	35명	

2. 여성합창단

구 분	정 원	비 고
계	50명	
지휘자	1명	
반주자	1명	
출연단원	48명	

3. 풍물단

구 분	정 원	비 고
계	15명	
예술감독	1명	
출연단원	14명	

「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2년 5월 18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(2011.11.29)에 따른 개정
- 연수구립풍물단 예술감독이 지휘자, 상쇠, 예술감독으로 혼용 표기되어 혼선을 유발하고 있음. 따라서, 직책명을 예술감독으로 통일하고자 함.
- 직책명 중 지휘자는 구립관악단과 구립여성합창단에, 예술감독은 구립풍물단에 적용함으로서 예술단체에 적절한 직책명을 사용하고자 함.
- 기타 표기상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술단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개정 주요내용

- 전형위원회 전형위원 변경(안 제4조제1항)
 -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함.

○ 구립예술단체 직책명(지휘자) 변경(안 제4조제2항)

- ‘지휘자’ 를 ‘지휘자 또는 예술감독(이하 “지휘자” 라 한다)’ 으로 변경

○ 객원연주자 명칭 변경(안 제8조제2항)

- “객원연주자” 를 “객원출연자” 로 함.

○ 직책수당을 받는 단원 변경(안 제8조제4항)

- “관악단원” 을 “단원” 으로 함.

3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2년6월7일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【(참조: 문화체육과장)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☎032-810-7088, FAX 032-810-7089, www.yeonsu.go.kr】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, 법인명,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사항

라. 제출서식

제 정 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(신·구조문 대비표 포함)

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휘자”를 “지휘자 또는 예술감독(이하 “지휘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객원연주자”를 “객원출연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관악단원”을 “단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 구분란 중 “객원연주자”를 “객원출연자”로 한다.

별표 3의 품물단 직책란 중 “감독”을 “예술감독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전형위원회) ①전형위원은 <u>주민생활지원국장</u>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. ②<u>지휘자</u> 전형에 대한 심의방법 및 채점기준은 전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. ③ (생략) 제8조(실비보상) ① (생략) ②각 예술단체의 단원 및 <u>직원연주자</u>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“별표2”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③ (생략) ④직책이 있는 <u>관악단원</u>에 대하여 별표3 직책수당을 지급한다.	제4조(전형위원회) ①----- <u>자치행정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<u>지휘자</u> 또는 <u>예술감독</u>(이하 “<u>지휘자</u>”라 한다)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제8조(실비보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직원출연자</u>----- ----- 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 <u>단원</u>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【별표1】 (생략) 【별표2】 공연수당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정기공연</th><th>수시공연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관악단원</td><td>(생략)</td><td>〃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여성합창단</td><td>(생략)</td><td>〃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풍물단원</td><td>(생략)</td><td>〃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객원연주자</td><td>(생략)</td><td>〃</td><td>〃</td></tr></table> 【별표3】 직책수당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직책</th><th>직책수당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 rowspan="5">관악단</td><td>지휘자</td><td>(생략)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부지휘자</td><td>(생략)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악장</td><td>(생략)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총무</td><td>(생략)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악기악보계</td><td>(생략)</td><td>〃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합창단</td><td>지휘자</td><td>(생략)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반주자</td><td>(생략)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풍물단</td><td>감독</td><td>(생략)</td><td>〃</td></tr></table>	구분	정기공연	수시공연	비고	관악단원	(생략)	〃	〃	여성합창단	(생략)	〃	〃	풍물단원	(생략)	〃	〃	객원연주자	(생략)	〃	〃	구분	직책	직책수당	비고	관악단	지휘자	(생략)	〃	부지휘자	(생략)	〃	악장	(생략)	〃	총무	(생략)	〃	악기악보계	(생략)	〃	합창단	지휘자	(생략)	〃	반주자	(생략)	〃	풍물단	감독	(생략)	〃	【별표1】 (현행과 같음) 【별표2】 공연수당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정기공연</th><th>수시공연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관악단원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〃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여성합창단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〃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풍물단원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〃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객원출연자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〃</td><td>〃</td></tr></table> 【별표3】 직책수당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직책</th><th>직책수당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 rowspan="5">관악단</td><td>지휘자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부지휘자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악장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총무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악기악보계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〃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합창단</td><td>지휘자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반주자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〃</td></tr><tr><td>풍물단</td><td>예술감독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〃</td></tr></table>	구분	정기공연	수시공연	비고	관악단원	(현행과 같음)	〃	〃	여성합창단	(현행과 같음)	〃	〃	풍물단원	(현행과 같음)	〃	〃	객원출연자	(현행과 같음)	〃	〃	구분	직책	직책수당	비고	관악단	지휘자	(현행과 같음)	〃	부지휘자	(현행과 같음)	〃	악장	(현행과 같음)	〃	총무	(현행과 같음)	〃	악기악보계	(현행과 같음)	〃	합창단	지휘자	(현행과 같음)	〃	반주자	(현행과 같음)	〃	풍물단	예술감독	(현행과 같음)	〃
구분	정기공연	수시공연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악단원	(생략)	〃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여성합창단	(생략)	〃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풍물단원	(생략)	〃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객원연주자	(생략)	〃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직책	직책수당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악단	지휘자	(생략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부지휘자	(생략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악장	(생략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총무	(생략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악기악보계	(생략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창단	지휘자	(생략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반주자	(생략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풍물단	감독	(생략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정기공연	수시공연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악단원	(현행과 같음)	〃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여성합창단	(현행과 같음)	〃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풍물단원	(현행과 같음)	〃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객원출연자	(현행과 같음)	〃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직책	직책수당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악단	지휘자	(현행과 같음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부지휘자	(현행과 같음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악장	(현행과 같음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총무	(현행과 같음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악기악보계	(현행과 같음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창단	지휘자	(현행과 같음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반주자	(현행과 같음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풍물단	예술감독	(현행과 같음)	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